2019년도 제1차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신탁부동산 일괄매각 공고(2)

6. 입찰보증금
① 입찰참가자는 소정 양식 1부
②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표등본(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유의사항
① 낙찰받는 낙찰 등 소정일일 이내에 정식 소정의 매매계약에 체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으로 대체하고,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매매대금 전액 중으로 공제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인 취소를 수 있다.
② 매도자가 공매공고 중의 공고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낙찰인는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할 수 없다.
④ 위 3. 2. 대해 입찰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⑤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내 전금해제권이 있다는 날부터하여 2년.
⑥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다.
⑦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자 본인의 권리로 매매계약 이후에 타인명의로 매매계약 불가능.
⑧ 매매계약체결 이전 입찰자가 본 경매건의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⑨ 본 공매의 관련한 매매계약은 당사와 매수자사이에만 유효한 것이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⑩ 공매물건 매매계약은 입찰자 본인 명의로 체결.
⑪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다.
⑫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다.
⑬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⑭ 매매계약체결 이후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다.
⑮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⑯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⑰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⑱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⑲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⑳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㉑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㉒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㉓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㉔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㉕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㉖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㉗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㉘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㉙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㉚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㉛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㉜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㉝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㉞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㉟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㊱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㊲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㊳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㊴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㊵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㊶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㊷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㊸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㊹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㊺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㊻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㊼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㊽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㊾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㊿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1)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2)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4)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5)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6)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7)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8)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59)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0)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1)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2)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4)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5)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6)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7)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8)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69)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0)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1)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2)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4)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5)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6)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7)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8)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79)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0)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1)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2)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4)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5)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6)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7)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8)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9)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0)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1)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2)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4)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5)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6)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7)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8)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99)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0)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1)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2)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4)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5)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6)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7)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8)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09)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0)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1)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2)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4)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5)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6)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7)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8)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19)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20)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21)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22)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2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124)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찰자가 매매계약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없이 반환한다.

8. 공매물건 : 주식 외 (세종시 전남 대해리로 129, 강남빌딩 23층)

9. 공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

(단위 : 원)

공매회차	공매실시일자	시 간	공매예정가	비 고
1회차	2019. 05. 08.(수)	10 : 00	2,687,000,000	
2회차	2019. 05. 15.(수)	10 : 00	2,428,000,000	
3회차	2019. 05. 22.(수)	10 : 00	2,196,000,000	
4회차	2019. 05. 29.(수)	10 : 00	1,968,000,000	
5회차	2019. 06. 05.(수)	10 : 00	1,772,000,000	
6회차	2019. 06. 12.(수)	10 : 00	1,595,000,000	
7회차	2019. 06. 19.(수)	10 : 00	1,436,000,000	
8회차	2019. 06. 26.(수)	10 : 00	1,293,000,000	
9회차	2019. 07. 03.(수)	10 : 00	1,164,000,000	
10회차	2019. 07. 10.(수)	10 : 00	1,048,000,000	
11회차	2019. 07. 17.(수)	10 : 00	944,000,000	

- 공매물 정가대금의 최는 지는 각 회차별 공매회시 전까지 공매정소에 입입할 경매회에이 하여, 해당회차 공매개시 이후에는 공매 정소 입입 및 입입참가자 본인의 권리이다.

10. 입찰방법 : 밀봉(전자입찰 (인증서방식 한정))

- 입찰 참가자는 공매공고 전 입찰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매공고 이후 입찰등록 대상으로 최고 입찰가를 최저 공매가가보다 해당회차에 낙찰자를 결정함.
- 최고 입찰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입찰가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입찰가를 최저 공매가가보다 해당회차에 낙찰자를 결정함.
- 공매물건 매매계약은 해당 회차 공매에 낙찰받은 낙찰자 본인 명의로 체결.

11. 입찰보증금 : 입찰가의 10%

12.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자 본인 또는 공동구매 또 부매대행자 지기참여 (주)상회 통도 상이

13. 공매물건 매매계약 체결 방법 : 전자입찰 (인증서방식 한정)

- 매매대금 납부방법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금)

구 분	금 액	납 부 일	비 고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전 금	매매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 공매물건의 수익증권 지분 : 전체중 - 지분 : 전체중 - 지분

본인 신청시	① 개인 : 인증서, 도장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증서 제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위임장(인감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도장

14. 입찰방법

① 입찰방법 : 인터넷 전자입찰(www.onbid.co.kr)
② 입찰개찰 : 매매계약체결 대한 인도 및 잔금 납입은 매수인 부담
③ 공매참가
- 본 공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매각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해 인터넷 전자입찰을 입찰 방법으로 하며, 입찰참가자 본인도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입찰자는 공매물건 입찰 당시에 이미 이용자 등록을 입찰에 성립함.
- 개찰 일시 : 각 입찰일자 개찰, 입찰마감 종료일 전후 그 다음 영업일을 개찰일로 함.
- 낙찰자 결정 : 최종입찰자 입찰금액 최고금액 공매가가 낙찰됨. 다만, 최고입찰 입찰가가 이미 공매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낙찰되지 않음.
- 입찰자는 부동산 등 등기, 등록, 등기, 등록, 등기, 등록,